

분할공고

1. 주식회사 토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(이하 '분할되는 회사')는 2019년 2월 28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사업부문 중 설계사업부문을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분할신설법인(주식회사 토펙건축사사무소)를 설립하고, 당사는 존속하며, 상법 제530조의 9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 변제할 책임지기로 하였습니다.
2. 위 결의에 의하여 상법 소정의 분할절차를 완료함에 필요한 승인을 받고 분할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제530조의11 및 제526조에 의하여 분할보고 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와 이견 공고로서 분할보고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분할완료 사실을 각 주주들께 이견 공고로서 보고함.

2019년 3월 11일

위와 같이 2019년 3월 11일자 인터넷 홈페이지(<http://www.topec.co.kr>)에 게재하여
공고하였음을 증명함.

주식회사 토펙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
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33,케이티엔지 제주본부사옥 6층(노형동)
의장 대표이사 현 군 출